

## 가천심혈관연구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, 진단 및 치료방법을 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, 심장 및 혈관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천대학교 부설 심혈관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연구소의 명칭은 가천심혈관연구소(Gachon Cardiovascular Research Institute; GCRI, 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라 부른다.

**제3조(사업)**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심혈관계와 관련된 기초연구
2. 심혈관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
3.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
4. 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발표,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
5. 국·내외 학회 및 학자의 연락과 상호 교류
6. 연구기금의 확보 및 관리
7. 기타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

**제4조(조직)**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연구소에 운영부, 교육연구부, 대외협력부를 둔다.
- ②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  1. 운영부는 연구소 운영(기획, 서무, 재무, 연구기금의 확보)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  2. 교육연구부는 심혈관계질환의 연구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실험에 관한 모든

## 5-1-39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사항을 수행하며, 연구부 산하에 줄기세포 연구실, 심부전 및 폐동맥 고혈압 연구실, 심초음파 및 비침습적 심장영상 연구실, 동맥경화 및 혈관운동 연구실, 심장부정맥연구실, 인공장기연구실, 심장혈관조직은행 등을 두고 필요에 따라 연구실을 재조정 할 수 있다. 아울러 연구소의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
3. 대외협력부는 국제학회의 개최 및 외국 학자와의 공동 연구 등 외국의 연구기관과 상호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며, 홍보 등 대외 제반 업무를 한다.

**제5조(연구원) ①** 연구소에는 5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.

**②**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연구위원 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
2. 전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해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(1)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
(2)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
3. 객원연구원 : 특정연구과제수행 또는 연구소(원)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내·외 에서 일시적으로 위촉된 자

4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

**③** 제2항의 제1호와 제4호의 전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연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고 연구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1. 이력서 1부

2. 추천서 1부

3. 최종학력증명서 1부

4. 경력증명서 1부

5. 주민등록 등본 1부

**④** 제2항의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기관장이 위촉한다.

**⑤**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**⑥** 연구기관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박사 후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**제6조(임원)**

1.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연구소장 : 1명

부 소 장 : 1명

감 사 : 2명

총 무 : 1명

각 부 장 : 3명

각 실 장

2.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 하고 연구 업무를 통괄한다.
3.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4. 감사는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5. 총무는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총무는 연구소의 회계를 관장한다.
6. 각 부의 부장과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각 부, 실장은 각부,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.

#### 제7조(운영위원회)

1.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2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으로 심장센터 소장 외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3.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본부 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4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.
5.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,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6.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(1)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, 결산
  - (2)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- (3)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  - (4) 연구원,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임명 또는 위촉
  - (5) 기타,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산하 위원회 활동의 심의, 평가

5-1-39~4 제5편 부설연구기관

7.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8.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연구소의 기능을 보완하고, 재정을 후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연구위원회, 자문위원회, 홍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9.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한다.

**제8조(보고)**

1. 연구소장은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 
운영보고서(학년도 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실적 총괄포함) - 다음 해 2월 말  
매 회계연도의 결산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- 다음 해 2월 말  
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- 1월 말  
연구계약체결현황,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- 수시
2.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9조(재정)**

1.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, 기부금,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2.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